

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-51호

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- '21년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소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고,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“[별표]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”에 추가소요사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(안 제14조제4항 신설)

-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정례회의 의사록*을 준용하여 상세하게 작성

* ①개회·정회·폐회의 일시, ②안건의 제목, ③출석 위원의 성명, ④주요 발언 내용,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추가

-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' 21.10.21. 시행)으로 인한 사모펀드 관련 용어 및 제도 변경사항 반영(안 [별표] 제5호 가목(16), 제11호나목 및 차목)
-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의 감독실익이 적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의 위임(안 [별표] 제56호차목)

3. 세부 개정 내용

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) 정보마당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